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3.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3. 31
- 라. 上程日字 : 1998. 4. 9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家庭福祉課長 趙貞順)

가. 提案理由

-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133조의 법령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기금조성 및 운영”을 “기금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함(조례제명)

-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2조 1항에 의거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게되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토록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안 제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 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안 제12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 ◎ '98.1월 지방자치법 제155조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권고된 사항으로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법률용어를 명확하게하여 상위법에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88 호
제출년월일	1998. . . (제 회)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6. 30.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8. 3. 3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의안 번호	188
----------	-----

□ 제안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으로, 같은법 제133조에서도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규정함(조례 제명).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게되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 금고에 예치관리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안 제12조)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조성및운영”을 “설치및운영”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중 “복지시설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행	정
안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u>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u>이의 효율적인 운용</u>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금의 조성)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p>②(생략)</p>	<p><u>제2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p>②(현행과 같음)</p>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서산시노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u></p> <p>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제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p> <p>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제적립할 수 있다.</p>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u></p> <p>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p> <p>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제적립할 수 있다.</p>
<p><u>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④(생략)</u></p> <p>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복지시설계장으로 한다.</p>	<p><u>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④(현행과 같음)</u></p> <p>⑤</p> <p>.....</p> <p>..... 가정복지계장.....</p>

현행	개정안
<p>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시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p>	<p>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②(헌행과 같음)</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p>	<p>제11조(회계관계공무원등)①.....</p>
<p>1. (생략) 2. 기금출납원 : 복지시설계장</p>	<p>1. (헌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p>
<p>②(생략)</p>	<p>②(헌행과 같음)</p>
<p>제12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출납명령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